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가합438 판결 [이행보증금반환청구]

전 문

원고주식회사 곰두리(변경 전 상호 표성산업개발)

피고이수건설 주식회사

변론 종결2014. 8. 21.

판결 선고2014. 9.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 성북구 돈암동 587-5 일대 돈암·이수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위

주택조합은 소외 도우이노칩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시행대행사로, 피고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는바, 소외 회사는 사실상 피고가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이다.

나. 소외 주식회사 표성엔지니어링(이하 '표성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은 2008. 11. 27.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아파트 건립 사업과 관련한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위탁계약(이하 '제1차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위탁계약은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피고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위 계약에서 표성엔지니어링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표성엔지니어링은 피고 명의의 조합분담금 예금계좌로 이행보증금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위 1억 8,000만 원은 표성엔지니어링의 A이 소외 B, C, D 명의로 된 각 개인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조합분담금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1. 5. 2. 위 B 명의의 계좌로 위 계약이행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 후 표성엔지니어링이 폐업을 하게 되자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표성산업개발')가 2012. 4. 9.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다시 제1차 위탁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위탁계약(이하 '제2차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제1차 위탁계약에 따른 표성엔지니어링의 계약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4. 8. 21. 현재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무산되어 이 사건 각 위탁계약 또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 받아 보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1억 8,000만 원 중 이미 반환한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만일 피고가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의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의무를 연대보증한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1차 위탁계약(2008. 11. 27.자 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주식회사 표성엔지니어링과 소외 회사이고, 제2차 위탁계약서(갑 제8호증)에도 계약당사자는 원고와 소외 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계약서 제11조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1억 8,000만 원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각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라고 할 것이고, 계약 상대방이 아닌 피고가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의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한다거나 또는 소외 회사의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차 위탁계약 직후인 2008. 11. 27.부터 2008. 12. 29. 사이에 소외 B, C, D 명의의 각 계좌에서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조합분담금 예금계좌인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630006503138, 630006503121)로 6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위 송금명의인 본인 내지 송금명의인과 관계있는 사람들 앞으로 돈암·이수지역주택조합이 분양계약을 작성하여 준 사실, 이후 2011. 5. 2. 피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표성엔지니어링 측 B의 계좌로 3,000만 원이 도로 반환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공사인 피고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는 조합원분담금 보관용 계좌로서 실질적으로 돈암·이수지역주택조합의 입·출금 지시에 따라 관리하는 계좌이고, 2011. 5. 2. 피고 명의의 위 계좌에서 표성엔지니어링 측 B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반환하여준 것 또한 주택조합의 지시에 따라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통상적인 주택조합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로 되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양규

판사류영재

판사이정훈